

독일의 지방세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I . 전체 조세체계(국세+지방세)

〈독일의 조세체계〉

공동세	연방세	주정부세	기초자치단체세	EU재정을 위한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영업세(주1)	관세(관세의 약10%) 맥주세를 제외한 소비세 대부분(담배세, 커피세, 설탕세, 석유세, 연초세, 조명기구세, 염세, 삼페인세 등) 보험세, 증권거래세등	부동산취득세 상속·증여세 자동차세 경마복권세 소방세 맥주세	영업세(주1) 부동산세 토지세 유흥세 애견세 수렵세 주점개설세	관세 농업부담금 부가가치세 일정분

주1) 영업세의 일정 분은 연방과 주정부로 이전되기 때문에 공동세라고 볼 수도 있고 반면, 영업세의 징수율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결정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면서 영업세의 약 85%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기초자치단체세라고 볼 수도 있음

- 독일 전체 조세체계는 ‘세수분리제’와 ‘세수공동제’를 함께 병행하는 구조로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수분리제’란 하나의 정부단계가 특정 세목의 징수·분배 권한을 전적으로 지니고 있는 방식으로 이에 해당하는 세목은 연방세, 주정부세, 지방자치단체 세목이 여기에 해당함. 반면 ‘세수공동제’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한 세원에서 징수된 세수를 일정 비율에 따라 연방세와 지방세로 분할하여 귀속시키는데, 공동세가 바로 세수공동제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임

〈세수공동제와 세수분리제의 장단점〉

	세수공동제	세수분리제
장점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자치단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세 신설 없이 조달할 수 있음(Part II에서 구체적으로 다룸)	자치단체가 연방과 마찬가지로 조세징수, 세율 등을 결정하고 새로운 종류의 조세를 도입 용이
단점	조세에 관한 규정을 변경할 경우 연방 및 자치단체 간의 이해를 조정해야 함	동시에 각 자치단체가 자본유치 경쟁으로 인해 자의적 세율 인상을 할 수 없음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소요재원을 각각 자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방정부의 고유사무는 군대, 철도, 운하의 항해 및 운하망 경영, 항공교통, 국토방위, 우편사무 등이며, 그 외의 모든 사무는 주 정부 사무로 볼 수 있음. 예외적으로 독일의 국가 전체 및 경제에 미치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대하여는 연방·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함

〈연방·주정부의 통합 부담사업〉

통합사업	내 용
공동체업무	지역경제구조 개선, 농업구조 개선, 해안보호, 대학교 및 대학병원 설립 등 국민생활 여건 개선
재정지원	주정부간 경제균형 유지 및 경제력의 조정,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자원 할당. 예를 들어 관할지역내에서의 사회주택 건설, 지자체의 교통망 정비, 도시개발·정비 등을 통한 경제성장 및 구조개선촉진사업
금융지원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특정사업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음 • 훈련촉진 - 연방정부 65%, 주정부 30% • 교육비 - 연방 100% • 주택보조 - 연방 50%, 주정부 50%

- 독일은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매우 높은 연방국가의 전형적인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 조세 수입에 관한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간의 배분이 헌법적 규정의 의해 보장되어 있음
- 특히 공동세는 연방헌법 제106조에 의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배분비율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는 연방국가로서의 기본 틀과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상호간 재정적 종속성을 배제함으로써, 연방이 지방을 수직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동반자 관계로 연방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을 중요시하는 결과임
- 세수비중이 높은 주요세를 공동세 세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지방의 취약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주요세의 세원을 국가와 지방이

공유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세수 비중이 큰 주요세를 공동세(지방세에 약 80%에 해당)로 운영하여 지방재정확충의 정책목적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조세운영의 복잡성을 최소화하려 했기 때문임

- 이외에도 공동세 운영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 ① 조세체계의 단순화로 징수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 ② 소득세와 소비세를 공동세화하는 경우, 지방이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어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에 기여할 수 있으며
 - ③ 또한 의존재원에 비해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확충될 수 있어 지방의 자주성을 제고할 수 있고
 - ④ 주요세목이 공동세일 경우 지방세수의 안정성이 제고됨
- 부가가치세는 연방헌법에서 할당기준이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지출 부담에 비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의 동의를 거쳐 일반법에서 배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방정부의 적자재정 등의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소득세나 법인세는 헌법에 규정된 만큼만 배분 받지만 부가가치세는 조정이 필요할 경우 상호합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아 필요 시 연방정부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재정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공동세의 배분비율〉

(2007기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시·군)
소득세	42.5%	42.5%	15%
영업세	7.5%	7.5%	85%
법인세	50%	50%	—
부가가치세	55%	43%	2%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2005년 기준)

국세(연방정부)	지 방 세		
	주정부	기초정부	총 지방세
51%	36%	13%	49%

II. 지방세의 체계

구 분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자산 과세 및 기타
공동세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부가가치세	-
주정부세	-	경마복권세, 맥주세	부동산취득세, 상속·증여세, 자동차세
기초단체세	영업세	유흥세, 애견세, 수렵세	부동산세, 주점개설세

1. 공동세 세목

- 세수의 규모적 측면에서 공동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세수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세수에 있어서도 약 80%에 해당하고 있는 바, 따라서 독일의 지방세체계의 핵심은 공동세제도에 있다 할 것임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전체 공동세 징수액 대비 약 43~45%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큰 세수 비중인 소득세 다음으로 세수비중이 높은 세원임
- 독일의 부가가치세는 Umsatzsteuer로서 직역하면 매상세에 해당하나 일반적인 소비에 부과되는 다단계 매상세로서 전단계까지의 세액이 공제되므로 내용으로 보면 부가가치세에 해당함
- 독일의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와 많은 측면에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과세대상	• 사업자가 사업의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 EU역외로부터 국내수입 • 국내에서 행해지는 EU역내의 취득
납세의무자	영업 혹은 직업활동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사업자 (단,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EU역내의 취득의 경우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등의 예외가 있음)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역년에 의하고 역년을 기준으로 한 과세기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매출액을 기초로 세액을 계산함
납세지	납세의무자나 법인의 소재지의 관할세무서
과세방법	사업자는 각 4분기 종료 이후 10일 이내에 세액예정신고와 사전납부를 행해야 하며(대기업의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짐), 1년이 종료한 후 확정하여 신고납부함

구 분	내 용
과세 표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와 역내에서의 취득하는 당시의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때 대가라 함은 공급을 받는 자가 이를 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일체의 모든 것을 의미함(단, 부가가치세는 제외)수입품의 경우 대가는 수입 당시의 관세가격산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수입 재화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세율	기본적으로 1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일부 항목에 대하여 6%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영세율 및 면세	〈영세율 대상 거래〉 - 수출과 수출물건의 임가공, 그리고 EU역내 공급 -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의 매출 등 〈면세 대상〉 - 연방철도의 공급 또는 기타의 용역 등 - 독일 우편주식회사의 우정사업 수입 등 - 독일 유스호스텔협회, 청소년여행 및 유스호스텔중앙협의회와 이들 단체가 가입한 하부단체·시설 및 유스호스텔이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 - 기타 법에서 열거된 항목
전단계세액공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이행한 공급 또는 기타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과되고 세금계산서에 구분 표시된 부가가치세 세액,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국내로 수입된 재화에 부과되는 수입 부가가치세 세액 및 자신의 사업을 위한 역내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기타 제도	세금계산서제도, 소액부징수제도, 과세표준율제도 등

– 주정부의 관할하의 세무서에서 징수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의하여 연방과 주정부간에 배분됨

구 분	내 용										
1단계	□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배분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배분비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합의 하에 조정 가능한 비율이며 중앙과 지방의 분배비율은 대략 50:50 정도가 일반적이며 동 비율은 상황에 조정되고 있음										
2단계	□ 주정부간 조정(1차 조정); 1단계에서 주정부에 배분된 부가가치세액 중 75%는 인구비례로 각 주에 배분함.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주는 인구수 산정 시 다음과 같은 가중치를 둠 <table border="1"> <thead> <tr> <th>주정부</th><th>가중치</th></tr> </thead> <tbody> <tr> <td>베를린, 브레멘 그리고 함부르크</td><td>135%^{주1)}</td></tr> <tr> <td>메케렌부르크-포퓰메른주</td><td>105%</td></tr> <tr> <td>브란덴부르크주</td><td>103%</td></tr> <tr> <td>작센-안할트주</td><td>102%</td></tr> </tbody> </table> 주1) 도시국가는 예외로 다른 넓은 영토를 지닌 주에 비해 주민1인당 높은 재정수요를 가지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임	주정부	가중치	베를린, 브레멘 그리고 함부르크	135% ^{주1)}	메케렌부르크-포퓰메른주	105%	브란덴부르크주	103%	작센-안할트주	102%
주정부	가중치										
베를린, 브레멘 그리고 함부르크	135% ^{주1)}										
메케렌부르크-포퓰메른주	105%										
브란덴부르크주	103%										
작센-안할트주	102%										

구 분	내 용
	□ 주정부간 조정(2차 조정); 나머지25%(최대 25%)는 재정력이 약한 주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는데, 주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지방분을 합친 것의 1인당 규모가 전국 주평균 이하인 주의 재정을 지원하는 보충재원으로 사용됨.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족분 전부에 대하여 보충해 주지는 않음 부가가치세 중 보충재원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주민 1인당 세수규모가 전국평균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가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 비율은 부가가치세의 지방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부족분의 보충 방식은 60%에서 95%사이에서 선형비례적 비율에 따라 분배됨

■ 영업세

- 영업세는 기업의 활동결과(수익)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법인세와 달리 법인뿐만 아니라 과세소득규모가 일정한계를 넘는 개인사업자에게도 부과됨. 다만, 영업세는 소득세법 제 35조에 의하여 소득세에서 공제됨
- 이 밖에 영업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세수입을 가지는 지방세로서 독일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율을 결정할 수 있는 세목임

구 분	내 용
과세대상기업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는 사업자이며 자유직업가(인적용역제공자)나 자산관리행위는 납세의무를 구성하지 않음
납세의무자	자신의 책임하에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
비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영업체로는 공기업이었다가 최근 민영화된 기업들, 중앙은행, 각종의 정책금융기관들, 공익, 자선, 종교목적의 법인 및 조합,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 조합,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교육기관 등이 있음
과세방법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별로 사전납부하고 영업세 계산금액의 확정을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고, 최종적인 영업세액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확정됨.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는 영업세 계산금액을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의결한 징수율에 곱하여 최종징수세액을 확정함
과세기간	회계연도는 기본적으로 역년을 기준으로 하나 상법에 따라 기장의 의무가 있고 역년과 다른 회계연도를 채택하는 기업에게는 동 회계연도의 영업수익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역년의 영업수익으로 봄
영업수익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업의 이윤에 영업세법 제8조에서 규정된 가산액과 제9조에 규정된 감산액이 고려된 후 영업수익이 확정됨 1) 가산액; - 장기채무에 대한 이자의 절반 - 기업연금이나 장기적인 부담이 회사의 설립, 회사나 회사지분의 취득과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에 이 연금이나 부담액, 회사의 확장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도 포함

	- 비공개주주의 이윤에 대한 지분 - 주식형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이윤지분 및 경영활동에 대한 대가 - 토지 이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사용료 지급액의 절반 - 국내외의 동업기업의 손실에 대한 지분 2) 감산액 - 기업자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단일가치의 1.2%. 이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가진 기업과 타인소유 부동산을 가진 기업사이에서 형평성을 위하여 타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지불하는 임대료 혹은 사용료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임 - 법인세법 상 과소자본에 대한 과세제도의 은닉배당처분. 이것은 법인세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영업세의 경우에는 다시 영업수익에서 감해짐
영업세의 계산	영업수익 × 기본세율(원칙적으로 5%) × 자치단체별징수율^{주1)} 주 1) 자치단체별징수율은 자치단체가 그 재정상황에 따라 결정하는데 각 자치단체는 매년 6월 30일 일까지 해당연도에 대한 징수율을 결정함

■ 소득세

- 소득세는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직접적으로 과세하는 직접세에 해당하며 다른 어떠한 세목보다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과세원칙을 잘 반영함
- 또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경제, 사회, 환경정책 등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적합한 세목으로 소득세는 독일 전체의 조세수입 중 약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기여도 측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임
- 소득세의 세수는 독일헌법에 따라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기 때문에 소득세는 공동세에 해당하고 소득세의 행정권은 연방의 위임을 받은 주 조세청이 갖고 있음. 입법권은 헌법에 따라 연방이 가지고 있는데 세수의 일부가 주정부로 유입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의 개정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함

구 분	내 용
납세의무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과세대상의 범위를 달리함 ① 거주자란 국적을 불문하고 독일 내에 주거지가 있거나 6개월 이상 중단 없이 거주하는 개인을 말하는데 거주자의 경우에는 독일 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②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은 원천지가 독일 내인 소득만을 과세함
과세대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유형을 법에서 다음의 7가지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원천이론을 따르되 순자산 증가설의 개념을 가미해 운영함 ① 농업 및 산림업 소득 ② 사업소득 ③ 독립적 활동소득 ④ 비독립적 활동소득

구 분	내 용
	⑤ 자본수익 ⑥ 임대소득 ⑦ 기타소득
과세기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범위가 하나의 역년 동안에 또는 대개 12개월의 기간이 하나의 사업연도 동안에 납세의무가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과세방법	세액의 결정은 소득신고에 근거하여 세무당국이 결정하여 부과함.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사전납부를 행하여야 하고 그 액수는 과거 연도에 비추어 결정됨. 단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함

■ 법인세

– 법인에 대한 소득세로서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세수비중은 약 4%내외임

구 분	내 용
납세의무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상호보험회사, 기타 사업상의 법인, 인적조합, 그리고 자산결합체 등이 납세의무를 짐
과세대상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취득하는 모든 소득은 사업 소득이며 일반적으로 과세됨
과세기간	한 역년 또는 사업연도
납세지	법인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속한 지역의 관할 세무서
과세방법	세액의 결정은 소득신고에 근거하여 세무당국이 결정하여 부과함.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사전납부를 행하여야 하고 그 액수는 과거 연도에 비추어 결정됨
세율	2008년부터 15% (그 이전에는 법인세율 25%)
연결납세제도	연결납세제도가 있어 지배모기업이 피지배자회사와 조세 목적상 단일단위로 취급 받을 수 있음 〈연결납세를 위한 조건〉 • 피지배기업은 일반적으로 거주기업(AG, GmbH, KGaA)이어야 하며, 지배 모기업은 거주 개인이거나 파트너쉽 또는 기업이 될 수도 있음 • 피지배기업은 재정적, 경제적으로 또한 조직상에서 지배모기업에 통합되어 있어야 함 • 재정적, 경제적, 조직상의 통합은 그룹과 세대상이 되고자 하는 피지배기업의 사업연도 초에 이루어져야 함 • 법인소득세 목적의 연결납세를 위해서는 이윤 및 손실에 대한 통합협정이 체결되어야 함. 국외에 있는 회사를 포함한 연결납세는 지배모기업이 독일 내에 영구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

2. 주정부세 및 기초자치단체세

■ 경마복권세

구 분	내 용
과세대상	공개적인 경마에서의 내기행위 및 국내의 공공적인 복권판매
납세의무자	경주복권사업의 행사를 주관하는 기업
과세금액	내기행위의 납입금의 일정율

■ 맥주세 등

구 분	내 용
과세대상	알코올 없는 맥주를 제외하고 맥주의 생산자나 수입업자를 기준으로 다음의 경우에 발생함 - 과세대상 재화가 생산기업으로부터 거래되기 위하여 반출될 때 - 과세대상 재화가 기업에서 소비될 때 - 과세대상 재화가 수입될 때
납세의무자	국내의 생산자나 수입업자
과세방식	생산기업은 기장 의무가 있으며 기장된 반출규모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월 세관당국에 납부

■ 부동산세

구 분	내 용
과세대상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부동산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이 그 단일가치의 확정시점에 귀속되는 사람. 귀속여부는 형식적인 소유권보다는 경제적 소유권의 관점에서 결정됨
과세표준 및 세율	해당지역의 세무서가 확정하는 부동산의 단일가치에 과세측정기준지수를 곱하여 과세측정기준액을 구하고 여기에 징수율을 곱하여 매년의 납세액을 계산함
비과세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토지, 직접적으로 공익목적이나 자선목적에 이용되는 토지,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성직자의 성직수행용 토지, 학문 및 교육용 토지, 병원 용지가 해당 목적을 위하여 사실상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비과세됨
과세방식	매 역년 초의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의하여 확정되어 부과되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납부함

■ 부동산취득세

구 분	내 용
과세대상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취득행위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또는 기타의 법률행위 - 법인의 합병·법인의 조직변경·단독경영사업의 공동사업의 공동사업으로서 전환 등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의 사원지위의 승계

구 분	내 용
납세의무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거래에 참여한 부동산 양도인과 부동산 양수인 쌍방임. 즉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와 양도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제의 관례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취득자가 부동산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공증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과세표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모든 대가. 다만,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 또는 대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법에 의한 부동산소유가격을 그 과세표준으로 함
세 율	3.5%
비과세 및 감면	• 부동산의 취득가치가 2,50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 • 상속 및 증여로 취득되는 부동산 • 매도인의 배우자의 취득 • 매도인의 직계자손의 취득 • 신탁관계의 청산에서 재취득 • 기타 열거된 취득행위
과세방식	부동산취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에 자진신고하여 세무서가 결정한 세액을 납부한 후에 세무서가 발급하여 준 완납증명서를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서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전 받음

■ 자동차세

구 분	내 용
과세대상	공공도로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나 자동차의 트레일러를 소유하는 것. 이 경우 소유하는 자동차 등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납세의무자	자동차에 대한 허가를 얻은 자
과세표준	승용차와 모터사이클의 경우 배기량이며 1997년부터 여기에 유해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치가 추가되었고, 기타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최대허용 무게이며 이 최대허용 무게가 3.5톤을 넘어서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유해물질과 소음허용 기준치가 함께 고려됨
세 율	□ 모터사이클 : 25ccm당 1.84유로 □ 자동차 : 100ccm 당 - 유로3급, 유로4급, 3리터급 자동차 : 6.75유로(경유자동차는 15.44유로) - 유로2급 자동차 : 7.36유로(경유자동차는 16.05유로) - 유로1급 및 유사자동차 : 15.13유로(경유자동차는 27.35유로) - 저공해 자동차가 아닌 것(오존경보시 운행가능) : 21.07유로(경유자동차는 33.29유로) - 저공해 자동차(오존경보시 운행이 허가되지 않음) : 25.36유로(경유자동차는 37.58유로) - 기타 자동차 : 25.36유로(경유자동차는 37.58유로)
감면	전기자동차, 중증 장애자용 자동차 등
과세방식	정부부과방식